제998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전기냉(난)방기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 기준 조정 등(강화) ㅇ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조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0조,제16조 2.전기세탁기 소비효율 기준 조정(강화) ㅇ 전기세탁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 1 3.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효율 기준 조정(강화) ㅇ 안정기내장형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 1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2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전력량계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추가 등(강화) ㅇ 전력량계 형식승인 변경시 시험항목 추가, 삭제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전력량계 기술기준 제3조의7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기준 제정안 (해양수산부)	1.비용 부담의 전가 금지 및 작업배치 의무(신설) ㅇ 어선소유자가 선내 안전보건 조치 결과로 어선원에게 비용을부담 전가 금지 ㅇ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가 어선원 작업 배치 결정할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명시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2.정보 제공 의무(신설) ㅇ (정보제공)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정보를 어선원에게 제공해야되며, 위험성평가 관한 문서를 항상 어선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비치해야됨(안 제7조) ㅇ (교육정보)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개인 보호장비 및 어로,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어선원에게 미리 제공해야함(안 제42조)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3.안전 및 보건조치(신설) ㅇ 어선원 안전 · 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어선소유자가 이행해야할 세부 기준을 명시 – (건강진단) 어선원이 위험 업무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건강진단과 의가 소견 등 필요 시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제8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작업환경의 정비 등) 설비, 기계, 어창 등 정비·정리하고, 선내의 작업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제9조) –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어로설비 및 작업장비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지 중에 작동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해야 하며, 설비가 신체를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방호장치 등 보호 조치를 해야함(제10조) – (통행과 승하선 안전)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어구 등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현측에서 떨어진 장소로 옮겨 통로를 확보해야함(제11조) – (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등) 어창, 냉동고 등 어선원이 밀폐구역에서 작업하는 경우 문을 여는 장치,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제12조) –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타기 쉬운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제13조) –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조리 작업 등에 액화석유가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하고, 누설 등 안전 조치를 해야함(제14조) – (안전보건표지) 어선원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위험물질 보관장소, 응급처지장비 보관장소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함(제15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선내조명) 선내 야간통행, 작업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명을 설치해야 함(제16조) – (바닥 위 등의 안전) 넘어지거나 뾰족한 것에 찔리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함(제17조) –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작업발판 및 디딤널 설치 시 변형, 부식 등을 고려하여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야 함(제18조) – (수중 추락의 방지) 해상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에 보호울타리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제19조) – (어선원의 휴식) 선내 작업 시 기온, 습도, 피로도 등을 고려해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제20조) – (선내 위생의 유지 등) 거주구역 및 작업장소를 청결히 유지하는 등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제21조) – (의사의 진료)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어선원에게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하고, 승무 가능 여부를 판담해야 함(제22조) – (통풍 및 환기) 조리실 등 고온 다습한 선내 작업장에서 통풍, 환기 등 온도 습도 조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제23조) – (쥐 및 곤충류의 제거) 거주설비, 위생설비 등 쥐 또는 곤충이 숨기 쉬운 장소에 매년 1회 이상 약품으로 제거해야 함(제24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화장실과 샤워실) 선내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미생물 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하는 등 청결 관리를 해야 함(제25조) – (조리 및 주방기구) 식기 등 조리 및 주방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함(제26조) – (식료품의 저장) 식료품의 종류에 알맞은 보존 방법을 사용하고 저장설비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제27조) – (식수 관리) 안전이 확인된 식수를 사용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제28조) – (감염방지 및 조치) 선내에 감염병 또는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격리조치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소독, 의료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제29조) –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어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유발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제30조) –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어선원이 술 또는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제31조)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진동에 대한 조치사항(신설) ㅇ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 감독자의 조치사항 – (진동감소 조치) 진동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진동작업에 종사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진동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진동기계 · 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 보수하는 등 유지 관리해야 함 – (유해성 등의 주지) 진동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호구 착용방법, 진동기계 · 기구 관리 방법, 진동장해 예방 방법 등을 어선원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소음감소 조치)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기계 · 기구 등에 밀폐 · 흡음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 소음 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함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4.비중요
		5.개인보호장비 구비 의무(신설) ㅇ 개인보호장비 및 작업장비 관련 어선소유자가 조치해야할 사항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개인보호장비의 요건)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하고, 어선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하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장화 등 특별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량만큼 선내에 갖춰둬야 함 – (개인보호장비의 조달) 개인보호장비를 신뢰성 높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함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6.작업장비 관련 의무(신설) ㅇ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 관련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 감독자가 조치해야될 사항 –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어로 및 작업장비 선택 –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검사 · 보수관리) 작업 전 각종 장비 상태 점검하고, 어로 및 작업장비가 부하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해야하며, 주기적으로 보수 · 관리를 해야함 –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특별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및 설비의 운용은 가급적 숙련된 어선원이 조작할 수 있도록 작업 배치하고,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알게 해야함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7.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신설) ㅇ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시행한 교육훈련은 문서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함 ㅇ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개인보호장비 및 어로,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함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7.비중요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지원액의 반납(신설) ㅇ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이 취소된 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때 피해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취소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초과 지원액을 반납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매월 분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1.비중요
5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참여제안서 포함항목(신설) ㅇ 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시공자의 선정 입찰 참여시 입찰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신설 * 시공자 재무상태, 설계개요, 물가변동 등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항, 마감재 규격·성능 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신설) ㅇ 주차공간의 면적 13.5㎡(1면)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제1항제2호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중 확장형(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준용하여 규제 ㅇ 데크의 면적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나목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노대 등의 면적 준용하여 규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2조	1.비중요
7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안 (농촌진흥청)	1.주의사항 표시의무(신설) ㅇ 무인항공 살포 농약에 대한 비산 피해 관련 경고문구(주의사항) 신설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7조	1.비중요
8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안 (농촌진흥청)	1.폐농약 처리관련 표시사항(신설) ㅇ 농약 포장지 의무사항에 폐농약 처리방안에 대한 표시기준 추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3조, 제11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9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환경부)	1.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 방법(신설) ㅇ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청방법(제4조) 및 검사의 항목·방법(제4조 ~ 제12조 및 별표 1, 2)을 규정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1.비중요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신설) ㅇ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 한함)에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4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제57조 2.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신설) ㅇ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한함) 행정처분 기준 신설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식품위생법 제71조,제74조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1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질병관리청)	1.신고 대상 제1급 감염병 추가(신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1) 정의,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역학적 연관성, (6)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신고·진단을 위한 세부적 기준 신설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제1-18	1.중요
1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문화예술교육사 1급의 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신설) ㅇ 문화예술교육사 1급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신설함. - (요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1급의 교육기관(이하 “1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전문인력(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1.비중요